※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체온계측이 확인 되지 37.3 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방문일 기준 2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있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방문객 대장 작성)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혜정입니다.

문수로드림파크 견본주택 내 청약 상담전화(052-261-700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있으니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상담자와 상담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 사항

■ 본 아파트는 2020. 4. 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 8. 27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제도기간내 모든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공급 신청자로 하여 청약한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자 중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중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자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자격 및 순위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기간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및 제3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신청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1명(부모, 신청자 및 배우자 순서대로 적용)을 세대원으로 인정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의3 및 제8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의 "소형·저가주택"은 분양전환을 포함하며, 공급개시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분양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해당면(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전환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에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양가격 또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청약 가입자 확인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자서명검증정보를 말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청약 가입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인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자서명검증정보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른 규칙, 제4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경우 청약통장 사본 제출 시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은 청약통장 가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명 및 주소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9.11.0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100%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는 사람만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명 및 주소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규칙, 제4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100%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는 사람만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명 및 주소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규칙, 제4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100%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는 사람만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명 및 주소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100%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는 사람만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명 및 주소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개별 통보 혜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등의 전매 및 이에 따른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자격이 제정되었으나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자로 1년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변경) 울산광역시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며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적용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해당 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청약자격 조건에 부적격 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및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② 청약통장 예치금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③ 주택소유 여부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④ 세대주 및 세대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 군인의 청약자격 제한사항 :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 전역(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는 청약 불가

■ 군인의 청약자격 확인서류 : 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청약자격 조건에 부적격 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및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적용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이 청약하실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 거주 신청자로도 우선하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 거주 신청 분은 입주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산무작위 방식을 통하여 추첨하며 추첨 시 추첨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로 간주되며 당첨자 발표 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입주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상 최초 세대주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후 세대주 변경 시 분양전환 불가.
- 전산무작위 방식을 통하여 추첨하며 추첨 시 추첨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로 간주되며 당첨자 발표 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에 있으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외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참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외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봄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참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부양기간 산정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기간이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함) *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참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입주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은 청약통장 가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명 및 주소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실 수 없는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지급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 확인이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자영업자(간이과세자,면세자포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자/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세 납부확인서(직전 납기도 포함)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직전 납기도 포함)	해당직장		
무직자	미작성시	세무서, 접수창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부양기간 산정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기간이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1명(부모, 신청자 및 배우자 순서대로 적용)을 세대원으로 인정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의3 및 제8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1명(부모, 신청자 및 배우자 순서대로 적용)을 세대원으로 인정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의3 및 제8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1명(부모, 신청자 및 배우자 순서대로 적용)을 세대원으로 인정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의3 및 제8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개별 통보 혜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등의 전매 및 이에 따른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자격이 제정되었으나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자로 1년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변경) 울산광역시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며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적용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해당 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청약자격 조건에 부적격 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및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② 청약통장 예치금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③ 주택소유 여부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④ 세대주 및 세대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 군인의 청약자격 제한사항 :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 전역(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는 청약 불가

■ 군인의 청약자격 확인서류 : 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청약자격 조건에 부적격 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및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적용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이 청약하실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부양기간 산정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기간이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1명(부모, 신청자 및 배우자 순서대로 적용)을 세대원으로 인정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의3 및 제8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개별 통보 혜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등의 전매 및 이에 따른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자격이 제정되었으나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자로 1년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변경) 울산광역시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며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적용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해당 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청약자격 조건에 부적격 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및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② 청약통장 예치금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③ 주택소유 여부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④ 세대주 및 세대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약접수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을 것

■ 군인의 청약자격 제한사항 :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 전역(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는 청약 불가

■ 군인의 청약자격 확인서류 : 군인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청약자격 조건에 부적격 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및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자로 입주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상 최초 세대주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후 세대주 변경 시 분양전환 불가.
- 전산무작위 방식을 통하여 추첨하며 추첨 시 추첨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로 간주되며 당첨자 발표 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

주택형[type]	35.59	42.38	43.19	51.69	52.15	53.60	55.39
아이너스 옵션 금액(원)	10,321,000	12,290,000	12,310,000	14,731,000	14,827,000	15,544,000	16,063,000

※ 상기 아이너스 옵션 금액는 부가가치세는 미포함이며, 취득세 등이 미포함됨.

- 아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상기 아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아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아이너스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자재수급 사정 등불가피 시공관리 사정관리 공정관리 등 현장여건에 따라 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본양계약 이후에는 아이너스옵션을 추가 할 수 없음. - 아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차원에 따라 해당은 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시행함. - 아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함. - 아이너스 옵션 선택시 계약자와 시공사 사이에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시공사 사정 및 현장조건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시공사가 결정함. - 아이너스 옵션 선택에